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20.06.11.
1차 개정 2020.08.13.
2차 개정 2020.09.04.
3차 개정 2024.07.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제2조(교원위원) 규정 제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임명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규정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추천한다.

제3조(강사위원) 강사단체는 추천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남대학교에 재직하는 강사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제4조(직원위원) ① 직원단체는 추천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학에 두는 직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남대학교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②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직원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조교위원) 조교노조는 추천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남대학교에 재직하는 조교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제6조(학생위원) 규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총학생회(여수 총학생회 포함)가 추천하는 학생은 대학·학부 또는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7조(외부인사 및 졸업생 위원) 총장, 교수평의회 의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은 추천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외부인사 및 졸업생을 규정 제5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추천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위원은 선거에 관하여 이 시행세칙에 따라 이의 신청·신고 등을 한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그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증명자료, 그 밖의 후보자의 신상·경력·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이의 신청·신고 등이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은 위원에 임명된 때에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인 등

제1절 교원선거인 등

제9조(교원선거인) ① 교원인 선거인(이하 ‘교원선거인’이라 한다)은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② 교원, 강사, 직원, 조교, 학생의 선거에서의 참여비율(이하 ‘참여비율’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교원선거인의 참여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2절 강사선거인 등

제10조(강사선거인) ① 강사인 선거인(이하 ‘강사선거인’이라 한다)은 규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② 강사선거인의 참여비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11조(투표결과 산정방법) ① 강사선거인에게 인정된 총유효투표수는 교원선거인 수(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교원선거인 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에 강사선거인의 참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에서 같다).

② 특정후보가 취득한 강사선거인의 유효투표수는 강사선거인에게 인정된 총유효투표수에 그 후보별 득표수를 총강사선거인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교원선거인 수가 1,100명이고 강사선거인 수가 600명이며 그 중 투표에 참가한 강사선거인 수가 400명인 경우, 어떤 후보의 강사선거인 득표수가 200명이라면 그 후보가 얻은 강사선거인의 유효투표수는 $(1,100 \times 2.5/100) \times 200/600 = 9.16$ 표이므로 결국 9표이다.

제3절 직원선거인 등

제12조(직원선거인) ① 직원인 선거인(이하 ‘직원선거인’이라 한다)은 규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직원선거인의 참여비율은 100분의 17로 한다.

제13조(투표결과 산정방법) ① 직원선거인에게 인정된 총유효투표수는 교원선거인 수에 직원선거인의 참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특정후보가 취득한 직원선거인의 유효투표수는 직원선거인에게 인정된 총유효투표수에 그 후보별 득표수를 총직원선거인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교원선거인 수가 1,100명이고 직원선거인 수가 800명이며 그 중 투표에 참가한 직원선거인 수가 400명인 경우, 어떤 후보의 직원선거인 득표수가 200명이라면 그 후보가 얻은 직원선거인의 유효투표수는 $(1,100 \times 17/100) \times 200/800 = 46.75$ 표이므로 결국 46표이다.

제4절 조교선거인 등

제14조(조교선거인) ① 조교인 선거인(이하 ‘조교선거인’이라 한다)은 규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교선거인의 참여비율은 100분의 3.5로 한다.

제15조(투표결과 산정방법) ① 조교선거인에게 인정된 총유효투표수는 교원선거인 수에 조교선거인의 참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특정후보가 취득한 조교선거인의 유효투표수는 조교선거인에게 인정된 총유효투표수에 그 후보별 득표수를 총조교선거인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교원선거인 수가 1,100명이고 조교선거인 수가 200명이며 그 중 투표에 참가한 조교선거인 수가 100명인 경우, 어떤 후보의 조교선거인 득표수가 40명이라면 그 후보가 얻은 조교선거인의 유효투표수는 $(1,100 \times 3.5/100) \times 40/200 = 7.7$ 표이므로 결국 7표이다.

제5절 학생선거인 등

제16조(학생선거인) ① 학생인 선거인(이하 ‘학생선거인’이라 한다)은 규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② 학생선거인의 참여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7조(투표결과 산정방법) ① 학생선거인에게 인정된 총유효투표수는 교원선거인 수에 학생선거인의 참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특정후보가 취득한 학생선거인의 유효투표수는 학생선거인에게 인정된 총유효투표수에 그 후보별 득표수를 총학생선거인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교원선거인 수가 1,100명이고 학생선거인 수가 20,000명이며 그 중 투표에 참가한 학생선거인 수가 10,000명인 경우, 어떤 후보의 학생선거인 득표수가 6,000명이라면 그 후보가 얻은 학생선거인의 유효투표수는 $(1,100 \times 10/100) \times 6,000/20,000 = 33$ 표이므로 결국 33표이다.

제18조(학생선거인의 선정) <삭제>

제19조(학생선거인후보자명부등의 관리) <삭제>

제20조(학생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관련 규정의 적용시점) <삭제>

제4장 선거에 관한 각종 서류의 서식 등

제21조(후보자등록신청 서류) ①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의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기탁금 완납 영수증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후보자의 인영은 관할위원회에서 정하는 서식과 방법에 따른다.

② 규정 제21조제1항제4호의 추천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 필요한 수량의 교부를 요청하되([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대상자 인적사항’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추천인 1명당 추천서 1장을 받아야한다.

③ 규정 제21조제1항제3호(재직증명서)·제5호(보직사퇴서)는 전남대학교에서 발행 또는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규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 및 그 서식을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22조(후보자의 위원회 제출 서류) 규정 제21조제3항 각호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식에 따른다.

1.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2. 공정행위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3. 공약준수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4. 소견서 및 공약사항([별지 제6호서식])
5. 연구윤리준수 확인서([별지 제6-1호서식])

제23조(선거인명부) ① 규정 제2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정정 등의 사무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기표방식에 의한 온라인투표를 할 경우에 선거인명부의 작성 사무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추천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공보·선거벽보의 제출·정정) 규정 제2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선거 공보 검인은 [별지 제11호서식],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출 및 규정 제29

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벽보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정정요청 및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이의신청서 등) ① 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25조제8항에 따른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제28조제5항에 따른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정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③ 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공고 등) 규정 제38조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 규정 제40조제3항·제41조제7항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취소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7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규정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규정 제24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7조의2(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규정 제27조에 따라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거운동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다.

제27조의3(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주최하는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를 제외하고, 학내의 기관, 단체, 선거인은 임의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정견발표회, 간담회, 설명회, 그 밖의 집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이 토론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 직원, 조교, 학생 등에게 토론패널의 할당 등의 방법

으로 공개토론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선거공보) ① 규정 제25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면수 및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규격: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면수: 12면 이내
3.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예상 선거인수, 선거공보의 작성수량·제출수량, 선거공보의 작성·제작에 필요한 세부사항, 선거공보의 검인일자 및 검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선거공보(안), 검인을 받은 전자파일 제출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후보자에게 공지한다.

1. 책자형으로 제작하는 선거공보의 작성수량·제출수량은 예상 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며, 작성·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배로 제출
2. 전자형으로 제작하는 선거공보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 30부와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화된 파일을 제출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예상 선거인수, 선거공보의 작성수량·제출수량, 제출장소, 제출기한, 전자공보의 송달 여부 등을 통보한다.

④ 후보자는 위 사항들을 준수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추천위원회에 전자파일을 포함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전3항에 따라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완료되면 지체없이 관할위원회에 이를 인도한다.

⑤ 규정 제25조제8항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신청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으며, 규정 제25조제8항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공보의 제출·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⑦ <삭제>

제28조의2(선거공보의 발송) ① 규정 제25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 확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관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우편 송달방법과 전자적 송달방법을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관할위원회가 우송하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하려고 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준비 및 필요 사항에 관해 관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와 협의된 방법과 기한을 준수하여 선거공보를 관할위원회에 인도한다.

④ 전자적 송달방법을 통해 선거공보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전자문서화 된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관할위원회에 인도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⑤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등재 순(교원, 강사, 직원, 조교, 학생 순)에 따라 제출 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제29조(선거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① 추천위원회는 규정 제28조제2항의 선거홈페이지를 학내 정보통신망에 개설·운영한다.

② 선거홈페이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와 총장이 협의하되, 다음 각 호의 구성과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1. 선거관련 정보 제공: 관할위원회, 추천위원회, 총장 등이 선거와 관련된 각종 공고,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선거에 관한 법령·규정을 안내하는 기능
2. 후보자정보 제공: 경력·학력·연구실적 등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공보를 게시하는 기능
3. 후보자의 정책홍보: 각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 공약 등을 글, 도화,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선거인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기능
4. 추천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신고 등을 접수하는 기능
5. 공개토론회의 실황중계 또는 그 녹화영상물을 게시하는 기능

③ 후보자가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영상에는 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업적, 총장관, 대학관, 대학발전방향 등에 대한 견해 또는 정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다만, 개인연설회·찬조연설·좌담회·토론회 등의 성격을 띠거나 그러한 성격을 갖는 부분을 담을 수 없다.

④ 선거인이 규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영상에 관해서도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30조(선거벽보) ① 규정 제29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

②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 후보자가 보완첩부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의 수량이 첩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지정한다.

- ④ 후보자는 추천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려는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 ⑤ 선거벽보를 선거홈페이지 및 대학 내 인트라넷 게시판 등 온라인 환경에서 첩부하고자 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31조(소형인쇄물 제작) ① 후보자는 정책 홍보를 위하여 소형인쇄물 1종을 제작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② 후보자가 소형인쇄물을 제작한 경우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이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소형인쇄물을 다음 각호의 규격에 따라 16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지 크기: 길이 25.7센티미터, 너비 18.2센티미터
2. 유형: 인쇄물
3. 제출부수: 30부

④ 후보자는 소형인쇄물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실대로 게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사진, 성명, 연령 등)
2. 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교육 및 연구 업적
3. 후보자의 상훈 수여 및 징계 처분 사항
4. 대학 운영에 관한 후보자의 소견
5. 대학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주요 정책과 실행 계획

⑤ 소형인쇄물의 배포 시기 및 금지 사항 등의 기준은 후보자가 확정되면 추천위원회가 이를 공지한다.

⑥ 제출된 소형인쇄물은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규정 또는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후보자는 제출기한까지 이를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추천위원회는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소형인쇄물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6장 투표 및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제32조(투표방법) ① 투표방법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전자적 기표방식에 의한 온라인투표로 할 수 있다. 전자적 기표방식에 의한 온라인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용지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방법과 병행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적 기표방식에 의할 경우 관할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기표소를 투표소로 본다.

제33조(동순위자 중의 선정방법) 규정 제37조제1항의 제1차 투표 또는 규정 제37조제3항의 결선투표에서 득표순위가 같은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및 그 선정순위를 정한다.

1.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고 득표수가 같은 차순위득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남대학교 장기근속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2.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고 결선투표의 대상이 되는 2인이 정해지는 득표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남대학교 장기근속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3조의2(선정취소·전부 또는 일부 무효에 따른 재선거) ① 총장임용후보자가 규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선정취소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재선정을 위한 재선거를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될 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의 선거공고에도 불구하고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없어 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이 지연될 때에 추천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방식은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관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추천위원회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르며 추천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칙 (2020.08.1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추천위원회는 이 시행세칙 공포 후 최초로 실시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관하여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시행세칙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

부칙 (2020.09.0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추천위원회는 이 시행세칙 공포 후 최초로 실시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관하여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시행세칙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

부칙 (2024.07.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삭제>

제3조(학생선거인에 대한 특례) 전남대학교 학칙 제34조제3항 단서의 후단에 따라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생의 경우, 우리 대학에 학적을 둔 학생선거인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시행세칙 제16조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제22대 총장선거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총장선거가 시행되기 전에 학생선거인의 선거 참여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은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관리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후보자(예정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선거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스스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조치하는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 · 직급 등)

성명

(인)

전남대학교 총장 귀하

후보자 추천서 교부신청서

1. 선 거 명

2. 입후보예정자

가. 성 명 (한 자)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소(전화번호)

3. 교부신청매수 매

년 월 일 실시하는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후보자 추천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후보예정자) ○ ○ ○ ㉠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력 서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으로
부작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직 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 -	휴대전화:	- -
E - mail			

2. 학력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 . . ~ . . .				

3. 경력 (주요경력 20개 이내, 증빙자료 첨부)

기 간	기 관	직위·직급	비 고

4. 병역사항 및 상훈

병역 사항	병역구분	필/면제	구 분	종 류	수여일자	수여기관
	복무기간	~				
	군 별					
	계 급					
	병 과					
징 계	처분일자	징계종류				

5. 연구업적 등

항 목	논문	저서	특허	기타 각종실적	비 고
연구업적 총 실적	편	편	건	건	

① 논문 및 저서

연번	구분 ¹	역할 ²	공저 자수	제 목	게재일자 (출판일자)	게재학술지명 (권,호,쪽)	비고

주) ¹ 구분은 국제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등으로 구분하되,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방법 등에 따른다.

² 역할은 제1저자, 교신저자 그리고 공저자로 구분

② 특허

연번	역할 ¹	특허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국가명	비고

주) ¹ 역할은 주발명자와 공동발명자로 구분

③ 기타 실적

연 번	실적내용	일 자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정행위 서약서

본인은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선정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선정과정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선거 관련 제반규정에 따른 기표 및 온라인 투표방법을 존중하고, 이의하지 않는다.
3.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총장선거후보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하며, 비난·음해 등 선량한 풍습, 그 밖의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총장후보등록자 상호간의 협약된 사항은 철저히 준수하고 선정 결과에 승복한다.
5.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될 경우,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의 최종적인 총장 임용을 존중한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약준수 서약서

본인은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제시한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규정 제21조제3항제4호 관련)

소견서 및 공약사항

※ 총장으로서의 자세, 대학을 위한 발전방안,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계획, 조직관리, 공직 윤리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A4용지 15매 이내)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주저자(혹은 교신저자)

소속:

성명:

연락처

- 이메일:
- 전화:

위 본인은(저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2007년 2월 이후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자기표절 포함), 중복투고/게재, 위조, 변조, 전남대학교연구윤리 검증 진실성위원회의 검증 등 전반적인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없으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 ※ 2007년 2월 이후 게재된 논문이 연구윤리부정 등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등 일체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 논문은 국제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등을 포함하고, 전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방법을 준용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규정 제20조 관련)

<표 지>

년 월 일 실시 전남대학교 제22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 거 인 명 부 (교원·강사·직원·조교·학생)

작 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정: 년 월 일

○○대학(원)(○책 중 ○권)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내 지>

등재번호 ①	주 소 (소 속) ②	성 별 ③	생년월일 ④	성 명 ⑤	투표용지수령인⑥		비 고 ⑦
					제1차투표	결선투표	

주) 1. 명부기재방법

- ① ‘등재번호’칸에는 선거인구분(교원, 강사, 직원, 조교, 학생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 단위로 그 선거인 성명의 가, 나, 다순(성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순)으로 적습니다.
 - ② ‘주소(소속)’칸에는 전남대학교의 주소를 적고 괄호안에 그 소속을 적습니다.
 - ③·⑤ ‘성별’칸과 ‘성명’칸은 선거인의 성별과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④ ‘생년월일’칸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 ⑥ ‘투표용지수령인’ 칸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하거나,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등을 실시할 때에 한정하여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합니다.
 - ⑦ ‘비고’칸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관할선관위는 선거인명부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된 자를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다만, 관할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윗 칸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쪽을 달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위원장의 장의 직인을 찍습니다.
 4. 장당 15명정도 기재되도록 적습니다.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1)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하고 ○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2)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3)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주) (3)항은 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 시 끝부분에 적습니다.

[별지 제7호의2서식] (규정 제20조 관련)

<표 지>

년 월 일 실시 전남대학교 제22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인명부 (교원·강사·직원·조교·학생)

작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정: 년 월 일

○○대학(원)(○책 중 ○권)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내 지>

등재번호 ①	주 소 (소 속) ②	성 별 ③	생년월일 ④	성 명 ⑤	휴대전화번호 ⑥	이메일주소 ⑦	비 고 ⑧

주) 1. 명부기재방법

- ① '등재번호'칸에는 선거인구분(교원, 강사, 직원, 조교, 학생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 단위로 그 선거인 성명의 가, 나, 다순(성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순)으로 적습니다.
- ② '주소(소속)'칸에는 전남대학교의 주소를 적고 괄호 안에 그 소속을 적습니다.
- ③·⑤ '성별'칸과 '성명'칸은 선거인의 성별과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④ '생년월일'칸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 ⑥ '휴대전화번호'칸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를 '-'를 포함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010-0000-0000)
- ⑦ '이메일주소'칸에는 외부메일 수신이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⑧ '비고'칸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관할선관위는 선거인명부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된 자를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다만, 관할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윗 칸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쪽을 달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위원장의 장의 직인을 찍습니다.
4. 장당 15명 정도 기재되도록 적습니다.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1)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하고 ○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2)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3)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주) (3)항은 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 시 끝부분에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규정 제20조 관련)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구 성 원 수 (년 월 일 현재)	선 거 인 명 부 에 등재된 선거인수	구성원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비 고

주) 구성원수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습니다.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① 구성원수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④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정된 선거인수	구성원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비고
		감	증	감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①칸은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습니다.

②칸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 통보서상의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③칸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④칸은 선거인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 등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⑤칸은 ②칸의 선거인수에 ③·④칸의 수를 증감한 수를 적습니다.

2. 이 통보서에는 별지 <선거인명부 수정상황>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별 지>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수정사유'칸은 이의제기 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규정 제20조 관련)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사항 등의 통보서

등 재 번 호	성 명	오기사항 등	비 고

주) '오기사항 등'란에는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록자 등에 대한 사실을 적습니다. (예: 성명 중 '○○'은 '××'의 오기임, ○년 ○월 ○일에 퇴직함, ○년 ○월 ○일 사망함 등)

[별지 제11호서식] (규정 제25조제3항 관련)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공보(안) 검인 확인서

기호		성명	
----	--	----	--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위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안)을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인함.

■ 공보검인 내용

기재사항	기재 여부	증빙서류 대조확인	위원회 확인
성명, 기호 및 사진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 연구업적 목록			
대학관 및 총장관			
소견서 및 공약사항			

검인 결과	
----------	--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2호서식] (규정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관련)

선거공보·선거벽보 제출서

1. 선거명: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2. 후보자성명:

3. 제출내역

구분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량(가)	제출수량(나)	부족수량(가-나)	비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선거벽보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 주) 1. '제출하여야 할 수량'은 추천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수량을 적습니다.
2. '제출수량'은 추천위원회에 실제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규정 제25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관련)

선거공보·선거벽보 정정요청서

선 거 명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	성 명			기 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1. 정정 매수:
2. 정정 내용:
3. 정정 이유: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선거벽보 내용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 ○ ①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 주) 1. 이 신청서는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정 매수'란에는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적습니다.

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 ○ 인

붙 임: 증명서류 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 주) 1.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2. '연락처'칸에는 추천위원회로부터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3.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규정 제25조제8항·제28조제5항·제29조제3항 관련)

(선거공보)·(후보자 정보 등)·(선거벽보)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신청 대 상 자	후보자 성명	
이의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후보자 정보 등)·(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훈·연구실적등·그 밖에 후보자관련 정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 ○ 인 붙 임: 증빙자료 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 주) 1. '이의신청 내용'칸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훈·연구실적등, 그 밖에 후보자관련 정보)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칸에는 추천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신청 대 상 자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의 성명	
이의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 ○ ㉠

붙 임: 증빙자료 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주) 1. ‘이의신청 내용’칸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벌·연구실적등)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칸에는 추천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와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제20 - 호

제22대 전남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공고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선정순위	기호	성명	득표수	득표율(%)
1순위				
2순위				

※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전남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40조(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거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공고 제20 - 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취소 공고

제22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이 취소로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 다 음 -

기호	성명	생년월일 (세)	종류 및 사유	발생일

끝.